

환경표지 인증기준

EL257

개정 2015년 1월 21일

환경부장관

인조 잔디 및 인조 잔디 구성 부품

EL257:2015



<http://www.me.go.kr>



제정자: 환경부장관
제정: 2012년 3월 14일 환경부고시 제2012-36호
최종 개정: 2015년 1월 21일 환경부고시 제2015-5호
원안 작성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이 기준에 대한 의견 제시 또는 문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인증평가단(전화 1577-7360)으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http://el.keiti.re.kr>)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목차

머리말	0
1 적용 범위	1
2 인용 표준	1
3 용어와 정의	1
4 환경 관련 기준	2
4.1 사용 금지 물질	2
4.2 기포 중 DMF 함량	3
4.3 접착제	3
4.4 충전재 및 충격 흡수 패드의 유해물질 함량	3
4.5 잔디 매트, 충전재 및 충격 흡수 패드의 유해원소 함량	4
4.6 제품 수거 및 유지보수 체계, 시공 가이드 및 유지 보수 매뉴얼	4
5 품질 관련 기준	4
5.1 품질 및 성능	4
5.2 충전재	4
6 소비자 정보	5
7 검증방법	5
8 시험방법	5
9 인증사유	6
부속서 A(규정) 화학물질 목록	7

머리말

이 기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증기준설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이다.

이에 따라 **EL257. 인조 잔디 및 인조 잔디 구성 부품【EL257-2012/3/2015-5】**의 기술적인 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국제표준 서식으로 작성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이다.

이 기준의 일부는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 공개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환경표지 인증기준

EL257:2015

인조 잔디 및 인조 잔디 구성 부품

Artificial turf and Other turf components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인조 잔디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판매될 수 있는 구성 부품인 잔디 매트, 충격 흡수 패드(현장에서 원료를 혼합하여 포설하는 구조의 충격 흡수 패드는 제외)의 환경표지 인증기준과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 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시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시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EL251, 접착제

GR M 6024, 인조잔디용 고무분말

KS M 0031,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의 분석을 위한 통칙

KS M 0032, 고주파 유도결합 플라즈마 방출 분광분석 방법 통칙

KS M 0064, 화학제품의 체가름 잔분 시험 방법

KS M 1991, 고분자 재료 중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정량 방법

KS M 3888-1, 학교체육시설 — 인조잔디

KS M 6519, 고무 제품 분석 방법

KS M 6956, 재활용 고무 분말의 유해물질 측정방법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폐기물공정시험기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고시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그 밖에는 KS M 3888-1에서 정한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3.1 인조 잔디

운동장 등 체육 시설, 휴게 시설 등 실외에서 잔디 대용품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함

- a) 잔디 매트 단독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 b) 잔디 매트에 충전재를 채워야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 c) 잔디 매트 아래에 충격 흡수 패드를 설치하여야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 d) 잔디 매트에 충전재 및 충격 흡수 패드를 혼합하여야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3.2 잔디 매트

기포 위에 잔디 파일을 가공한 것

3.3 기포(woven fabrics)

잔디 파일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직물

3.4 잔디 파일

기포에 고정하여 잔디 모양을 낼 수 있는 합성수지 또는 섬유

3.5 충전재

파일 안정화나 충격 흡수를 위하여 파일 틈에 채우는 입상 재료

3.6 충격 흡수 패드

인조 잔디 사용자의 충격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고무 또는 합성수지 등의 판상 재료

3.7 프탈레이트

염화비닐수지(PVC, polyvinyl chloride)와 같은 합성수지에 유연성을 부여하거나 액상제품에 용매로 사용하는 물질로서, 1,2-벤젠디카르복시산(1,2-benzenedicarboxylic acid)으로 분류될 수 있는 화합물

3.8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2개 이상의 벤젠고리를 지닌 방향족탄화수소류의 총칭

4 환경 관련 기준

인조 잔디 및 인조 잔디 구성 부품의 전과정 단계를 고려한 환경성 항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인조 잔디 및 인조 잔디 구성 부품의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항목

전과정 단계	환경성 항목	환경 개선 효과
원료취득	-	-
제조	▪ 사용 금지 물질	▪ 유해물질 사용 감소
	▪ 기포 중 DMF 함량	▪ 유해물질 사용 감소
	▪ 접착제	▪ 유해물질 사용 감소
유통·사용·소비	▪ 충전재 및 충격 흡수 패드의 유해물질	▪ 유해물질 배출 감소
	▪ 잔디 매트, 충전재 및 충격 흡수 패드의 유해원소 함량	▪ 유해물질 배출 감소
폐기	▪ 제품 수거 및 유지보수 체계, 시공가이드 및 유지보수 매뉴얼	▪ 폐기물 발생량 감소
재활용	-	-

4.1 사용 금지 물질

잔디 파일에는 다음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비고 제품을 구성하는 질량분율로서 5 % 이하의 원사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a) **부속서 A**에 따른 알리지성 분산염료, 발암성 염료
 - b)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이들의 화합물, 6가 크로뮴(Cr⁶⁺) 화합물을 원료로 사용한 염료 및 안료
 - c) **부속서 A**에 따른 난연제
 - d) 염화비닐수지(PVC, polyvinyl chloride)를 사용할 때는 프탈레이트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제품에 함유된 프탈레이트 함량의 합은 질량분율로서 0.1 % 이하이어야 한다.
- 비고** 프탈레이트 함량의 합은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dibutyl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butylbenzylphthalate),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di-(2-ethylhexyl)phthalate),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di-(iso-nonyl)phthalate), 다이옥틸프탈레이트(DNOP, di-n-octyl phthalate), 다이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 di-(iso-decyl)phthalate) 각각에 대한 함량의 합으로 한다.
- e) **부속서 A**에 따른 염소화 벤젠, 염소화 톨루엔
 - f) 세척제, 유연제의 구성 원료로서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APEOs, alkylphenol ethoxylates) 및 알킬페놀유도체(APDs, alkylphenol derivatives), 디메틸염화암모늄(DTDMAC, dimethyl ammonium chloride), 디스테아릴디메틸염화암모늄(DSDMAC, distearyl dimethyl ammonium chloride), 니트릴로트리아세트산(NTA, nitrilotriacetic acid)

4.2 기포 중 DMF 함량

기포를 코팅할 때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기포 중 디메틸폼아마이드(DMF, dimethylformamide) 함량의 합은 10 mg/kg 이하이어야 한다.

4.3 접착제

접착제는 EL251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거나, 해당 기준에서 정한 **4절** (환경 관련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4 충전재 및 충격 흡수 패드의 유해물질 함량

유해물질 배출 및 안전성과 관련하여 충전재 및 충격 흡수 패드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규사, 나무껍질 입자 등 단순 가공한 유기·무기 충전재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a)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에틸벤젠(ethylbenzene) 및 자일렌(xylene) 함량의 총합은 50 mg/kg 이하이어야 하며, 벤젠(benzene)의 함량은 1 mg/kg 이하이어야 한다.
- b) PAHs 함량은 **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 PAHs 함량 기준

구분	충전재	충격 흡수 패드
benzo[a]pyrene (mg/kg)	1 이하	20 이하
부속서 A 에 따른 각각에 대한 함량의 합 (mg/kg)	10 이하	200 이하

- c) 아연(Zn) 함량은 25 000 mg/kg 이하이어야 한다.

4.5 잔디 매트, 충전재 및 충격 흡수 패드의 유해원소 함량

수계 및 토양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잔디 매트, 충전재 및 충격 흡수 패드의 유해원소 함량은 **표 3**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규사, 나무껍질 입자 등 단순 가공한 유기·무기 충전

재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표 3 유해원소 함량 기준

항목	납(Pb)	카드뮴(Cd)	6가 크로뮴 (Cr ⁶⁺)	수은(Hg)	비소(As)	구리(Cu)	시안(CN-)
기준 (mg/L)	3 미만	0.3 미만	1.5 미만	0.005 미만	1.5 미만	3 미만	1 미만

4.6 제품 수거 및 유지보수 체계, 시공 가이드 및 유지 보수 매뉴얼

폐기물 감소와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 a) 신청인은 폐기되는 제품의 수거와 판매 제품의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시행·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전문 기업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적을 제시할 때는 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b) ‘시공 가이드 및 유지 보수 지침’을 매뉴얼로 보유하고 있으며 설치자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설치 단계에서 “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환경표지 인증기준 중 ‘EL251. 접착제’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받은 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4절 (환경 관련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보기 ‘시공 가이드 및 유지 보수 지침’의 예로는 KS M 3888-1의 부속서 D ‘인조 잔디 시공 및 유지 보수 지침’이 있다.

5 품질 관련 기준

5.1 품질 및 성능

제품은 KS M 3888-1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2 충전재

충전재를 사용할 때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a) 입자 크기 및 비중은 표 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4 충전재 입자크기 및 비중 기준

항목	기준
입자 크기	0.5 mm 미만의 입자가 질량분율로서 1 % 미만일 것
비중 ^a	1.1~1.5

^a 코르크 등과 같은 천연소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b) 폐고무류 분말 충전재의 아세톤 추출물, 회분, 수분, 철분 및 섬유분은 GR M 6024의 5.2 ‘고무분말의 성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소비자 정보

6.1 인증사유

제품의 인증사유를 카탈로그 등에 해당 제품이 환경영향 저감에 기여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6.2 유지관리 정보

제품을 현장에 설치할 때 지속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 및 관련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6.3 잔디 매트 정보

잔디 매트는 잔디 파일 길이(단위는 mm로 표시한다.) 및 적정용도(운동용, 오락용, 조경용 등)를 표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7 검증방법

인증기준 항목별 검증방법은 표 5와 같다.

표 5 인증기준 항목별 검증방법

인증기준 항목		검증방법
환경 관련 기준	4.1	a)~c) 제출 서류 확인
		d) 제출 서류 확인 및 8.2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e)~f) 제출 서류 확인
	4.2	8.3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4.3	제출 서류 확인 또는 8.4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4.4	a)~b) 8.5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c) 8.6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4.5	8.7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4.6	제출 서류 확인 및 현장 확인	
품질 관련 기준	5.1	8.8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른 인증서
	5.2	a) 8.9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b) 8.10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른 인증서
소비자 정보		제출 서류 확인
비고 충전재는 입자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잔디 파일은 두께와 관계없이 길이 방향으로 1 cm로, 기포는 1 cm x 1 cm, 충격 흡수 패드는 1 cm x 1 cm x 1 cm가 되도록 잘라서 시험한다.		

8 시험방법

8.1 일반사항

- 시험 시료 수는 신청 제품별 1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 시료 수가 1점 이상 필요할 때에는 시험 시료를 추가할 수 있다.
- 시험 시료는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제품 또는 출하 대기 상태의 제품 중에서 환경표지 인증수탁기관이 무작위 채취한다.
- 시험 결과는 KS Q 5002에 따라 개별 기준 값의 자릿수에 1 이상을 더한 자릿수로 수치를 맺는다. 다만, 시험방법에 수치맺음 자릿수가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비고 시험성적서에는 수치맺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8.2 사용 금지 물질

KS M 1991에 따라 시험한다.

8.3 기포 중 DMF 함량

KS M 0031에 따라 시험한다.

8.4 접촉제

EL251에서 정한 **4절** (환경 관련 기준)에 따라 시험한다.

8.5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에틸벤젠(ethylbenzene) 및 자일렌(xylene) 함량

KS M 6956에 따라 시험한다.

8.6 PAHs 함량

KS M 0032에 따라 시험한다.

8.7 잔디 매트, 충전재 및 충격 흡수 패드의 유해원소 함량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의 ES 06150.b, 7.2(용출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8.8 제품의 품질 및 성능

KS M 3888-1에 따라 시험한다.

8.9 충전재의 입자 크기 및 비중

8.9.1 입자 크기

KS M 0064에 따라 시험한다.

8.9.2 비중

KS M 6519에 따라 시험한다.

8.10 폐고무류 분말 충전재

GR M 6024에 따라 시험한다.

9 인증사유

인증사유 범주 구분	자원순환성 향상 ^a	에너지 절약 ^b	지구 환경오염 감소 ^c	지역 환경오염 감소 ^d	유해물질 감소 ^e	생활 환경오염 감소 ^f	소음·진동 감소 ^g
해당 여부	○ ^h				●		
^a 자원 절약, 물 절약, 재활용성 향상, 유효자원 재활용 등 ^b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사용 등 ^c 온실가스 배출 감소,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감소 등 ^d 대기 오염물질 배출 감소, 수계 오염물질 배출 감소, 토양 오염물질 배출 감소, 폐기물 발생 감소, 생분해가 잘 됨 등 ^e 유해물질 사용 감소, 인체 유해물질 노출 감소 등 ^f 실내 공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빛공해 감소 등 ^g 저소음, 진동 감소 ^h 해당 제품에 한함							

부속서 A
(규정)

화학물질 목록

A.1 알러지성 분산염료(dyestuffs classified as allergenic)

CAS 등록번호	물질명
2475-45-8	C.I. Disperse Blue 1
2475-46-9	C.I. Disperse Blue 3
3179-90-6	C.I. Disperse Blue 7
3860-63-7	C.I. Disperse Blue 26
12222-75-2	C.I. Disperse Blue 35
12222-97-8	C.I. Disperse Blue 102
12223-01-7	C.I. Disperse Blue 106
61951-51-7	C.I. Disperse Blue 124
23355-64-8	C.I. Disperse Brown 1
2581-69-3	C.I. Disperse Orange 1
730-40-5	C.I. Disperse Orange 3
12223-33-5	C.I. Disperse Orange 37
13301-61-6	C.I. Disperse Orange 76
2872-52-8	C.I. Disperse Red 1
2872-48-2	C.I. Disperse Red 11
3179-89-3	C.I. Disperse Red 17
119-15-3	C.I. Disperse Yellow 1
2832-40-8	C.I. Disperse Yellow 3
6373-73-5	C.I. Disperse Yellow 9
12236-29-2	C.I. Disperse Yellow 39
54824-37-2	C.I. Disperse Yellow 49

A.2 발암성 염료(dyestuffs classified as carcinogenic)

CAS 등록번호	물질명
3761-53-3	C.I. Acid Red 26
569-61-9	C.I. Basic Red 9
632-99-5	C.I. Basic Violet 14
1937-37-7	C.I. Direct Black 38
2602-46-2	C.I. Direct Blue 6
573-58-0	C.I. Direct Red 28
2475-45-8	C.I. Disperse Blue
82-28-0	C.I. Disperse Orange 11
85136-74-9	C.I. Disperse Orange 149
6250-23-3	C.I. Disperse Yellow 23
2832-40-8	C.I. Disperse Yellow 3

A.3 난연제(flame retardants)

CAS 등록번호	약어	물질명
59536-65-1	PBBs	polybrominated biphenyles
32534-81-9, 32536-52-0, 1163-19-5	PBDEs	polybromodiphenyl ethers
79-94-7	TBBPA	tetrabromobisphenol A
25637-99-4	HBCD	hexabromocyclododecane
85535-84-8	SCCP	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C ₁₀ ~C ₁₃)
126-72-7	TBPP	tris(2,3-dibromopropyl) phosphate
115-96-8	TCEP	tris(2-chloroethyl) phosphate
545-55-1	TEPA	tris(aziridiny) phosphine oxide

A.4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CAS 등록번호	물질명
83-32-9	acenaphtene
208-96-8	acenaphthylene
120-12-7	anthracene
56-55-3	benzo[a]anthracene
50-32-8	benzo[a]pyrene
205-99-2	benzo[b]fluoranthene
191-24-2	benzo[g,h,i]perylene
207-08-9	benzo[k]fluoranthene
205-82-3	benzo[j]fluoranthene
218-01-9	chrysene
53-70-3	dibenz[a,h]anthracene
206-44-0	fluoranthene
86-73-7	fluorene
193-39-5	indeno[1,2,3-c,d]pyrene
91-20-3	naphthalene
85-01-8	phenanthrene
129-00-0	pyrene
192-97-2	benzo[e]pyrene

A.5 염소화 벤젠, 염소화 톨루엔(chlorinated benzenes, chlorinated toluenes)

CAS 등록번호	약어	물질명
95-50-1, 541-73-1, 106-46-7	DCB	dichlorobenzenes
12002-48-1, 87-61-6, 120-82-1, 108-70-3	TCB	trichlorobenzenes
95-94-3	TetCB	tetrachlorobenzenes
608-93-5	PeCB	pentachlorobenzene
118-74-1	HCB	hexachlorobenzene
95-49-8, 108-41-8, 106-43-4	-	chlorotoluenes (2,3-dichlorotoluene; 2,4-dichlorotoluene; 2,5-dichlorotoluene; 2,6-dichlorotoluene; 3,4-dichlorotoluene; 3,5-dichlorotoluene)
32768-54-0, 95-73-8, 19398-61-9, 118-69-4, 95-75-0, 25186-47-4	DCT	dichlorotoluenes (2,3-dichlorotoluene; 2,4-dichlorotoluene; 2,5-dichlorotoluene; 2,6-dichlorotoluene; 3,4-dichlorotoluene; 3,5-dichlorotoluene)
98-07-7, 2077-46-5, 6639-30-1, 7359-72-0, 102-47-6	TrCT	trichlorotoluenes (α,α,α -trichlorotoluene; 2,3,6-trichlorotoluene; 2,4,5-trichlorotoluene; 2,3,4-trichlorotoluene)
5216-25-1, 81-19-6, 134-25-8, 31259-91-3, 31259-91-4	-	tetrachlorotoluenes (α,α,α,p -tetrachlorotoluene; 2,6, α,α -tetrachlorotoluene; 2,4, α,α -tetrachlorotoluene; α,α,α,ar -tetrachlorotoluene; 2,3,5,6-tetrachlorotoluene)
877-11-2, 13014-18-1, 13014-24-9, 31904-18-4	-	pentachlorotoluenes (2,3,4,5,6-pentachlorotoluene; 2,4, α,α,α -pentachlorotoluene; $\alpha,\alpha,\alpha,3,4$ -pentachlorotoluene; $\alpha,\alpha,\alpha,ar,ar$ -pentachlorotoluene)

[공통기준]

1.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간 동안 환경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위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반내용,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대책 및 다음 각 목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실천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가. 소재 지역의 환경규제기준 목록
 - 나. 환경규제기준 이행 체계(조직도에 역할 등을 기재한 것)
 - 다. 환경규제기준 이행 기록문서 보관 규정
2.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정한 ‘소비자 정보’ 표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제품 관련 ‘소비자 정보’는 제품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 표면에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 제품안내서, 사용설명서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 나. 서비스 관련 ‘소비자 정보’는 서비스 운영 사업장 건물 내·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내·외부에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납품서, 보증서 및 홍보물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3.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나 인증을 받은 자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 원료나 사용 장소 등의 제한기준이 있거나 제품 생산 이전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과 해당 규정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5.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인용된 각종 규격은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인증을 신청할 때의 최신 규격을 적용한다. 또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규제기준이 대상제품별 인증기준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기준을, 기준 폐지 등의 경우에는 개정 전 기준을 해당 인증기준이 개정되기 전까지 잠정 적용한다.
6.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른 품질 관련 표준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술원장이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인증기준에 따른 검증 방법]

1. 규정된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기술원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말한다. 다만,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시행한 시험결과로 검증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술원장이 지정한 전문가의 입회하에 확인·검증을 받아야 한다.
 - 가. 법 제5조의3제4항제12호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나.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에서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예: KOLAS 인정 시험·검사기관)
 -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인정한 시험·검사기관
 - 라. 국제표준 ISO/IEC 17025에 적합한 외국의 시험·검사기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에서 시험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시험·검사기관
2. 제1호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시험·검사기관은 기술원장이 시험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원장의 요청을 거부하는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는 시험의뢰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출 서류 확인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원료 수급/생산 내역서, 제품과 관련한 인증서, 사용설명서나 안내서 또는 제품 등으로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한다. 서비스일 경우 실적 자료, 증빙 서류 및 현장 사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제출 서류만으로 검증이 곤란할 때는 제1호에 준하는 시험 등을 추가하도록 할 수 있다.
4. 인증을 받은 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원료나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모델의 제품에 대하여 추가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원료나 부품·소재에 대하여는 종전 검증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인증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5.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인증하려는 경우, 기술원장은 제품 단위 내의 모델 가운데 하나를 임의 선정하여 대표로 검증한다.
6.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인증하려는 경우, 기술원장은 제품 단위 내의 모델 가운데 하나를 임의 선정하여 대표로 검증한다. 다만, 모델별로 환경성 및 품질 정보의 일부가 서로 달라 영향을 미치는 환경 관련 또는 품질 관련 기준항목은 각각의 모델별로 검증한다.

